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814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1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안 제3조 중 “자치구”를 삭제함.

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자치구,”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**및 자치구, 시 산하** 투자·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	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**및 시 산하** 투자·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·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, 양해각서 등(이하 “계약서 등”이라 한다)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,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.

제5조(민간에 권고) 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